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-78호

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「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7월 3일

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: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2. 제안이유

○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,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「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」를 설치하며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목적, 시장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3조)

나.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안 제6조)

다. 공동위원장의 직무,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라.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, 의견 청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안 제11조)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6년 7월 8일

나. 제출사항

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출처 :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

- 주소 : (30151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
- FAX : (044) 300-7219 / E-mail : reho@korea.kr

라. 문의처 : (044) 300-7313

붙임 :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

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

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세종특별자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세종특별자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, 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 및 국가정책 반영을 위하여 정부, 국회,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한다.

1. 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부합하는 기관의 설치 및 유치에 관한 사항

2. 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행정수도 조성을 위한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에 관한 사항

3. 정부, 국회,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공론화, 지역 여론 수렴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「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호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에 위원회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 1명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·국장·본부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

2. 변호사,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교수

3. 경제, 사회, 문화,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

5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7조(공동위원장의 직무)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필요하

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) ① 위원회는 업무를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방향을 연구·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0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